

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1호 2019. 7. 30.(화)

선 람	기관(부서)의 장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19-1062호 2019년 청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1
- 고창군 공고 제2019-1063호 2019년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법인 추가모집 공고 13
- 고창군 공고 제2019-1067호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35
- 고창군 공고 제2019-1077호 2019년 전북사회조사 조사요원 모집 공고 105
- 고창군 공고 제2019-1100호 2019년 제4회 고창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108

【취 보】

- 2019 종합민원과 신축허가-50 (2019.7.23.) (무장면 이용필)도로지정 113

--	--	--	--	--	--	--	--	--	--	--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 공고 제2019- 1062호

전북형 청년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차)

청년 · 신중년실업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9년 청년취업지원사업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9. 7. 16.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5명(청년 8, 신중년 7)
- 지원내용
 - 청년 : 1인당 월 50~65만원씩 12개월 기업지원(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 ① 180만원~190만원 미만 : 50만원 ② 190만원~200만원 미만 : 60만원
 - ③ 200만원이상 : 65만원
 - 다만,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원금은 60만원으로 함
 - 신중년 : 1인당 월70만원씩 12개월 기업지원(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
- 지원한도 : 청년은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이내, 신중년은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40%이내
 - *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한도는 청년취업지원 + 신중년 취업지원 합하여 40% 이내
 - * 상시근로자 수 : 지원대상 신규채용일 직전 3개월 고용보험가입자 수의 평균인원

2.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고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청년·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월 급여 18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전년도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 전년도 사업참여자 수(중도탈락자 제외) 이상일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

○ 취 업 자

- 청년·신중년 취업 참가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이고, 청년 만18세~39세 이하, 신중년 만40세~64세 이하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 취업지원 한도 : 청년은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 신중년은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의 40%이내

※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한도는 청년취업지원 + 신중년 취업지원을 합하여 40% 이내

3. 신청 제외대상

가. 기 업

- ① 소바·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 기업(국·지방세 등)
 -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④ 청·신중년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청·신중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⑥ 청년·신중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⑩ 청·신중년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⑪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파견 목적 채용기업
- ⑫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여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다만, 전년도 총 채용인원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적용제외)
- ⑬ 기타 청·신중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나. 취업자

-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 ② 청년 또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보조금이 지원되고 청장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청장년취업 근무만료 자
- ③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⑤ 청년 또는 신중년취업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장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⑥ 휴학생, 재학생
 - 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함
 -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경우
 - 재학(고등학교·대학교·방송·통신·야간대 등)기간 중 3개월 이하(주 20시간이하)의 직장체험, 현장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19. 7. 16 ~
- 제출서류
 - 청년·신중년 취업채용신청서 각 1부
 - 청년·신중년 취업 운영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가입자목록(직전3개월)
 - (예시) 2019년 4월 채용 :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기준으로 제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청방법 : 방문·우편· e-mail 접수

6.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청·신중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 청·신중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청·신중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청·신중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청·신중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청·신중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문의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 063-560-2359)

전화번호	e-mail	주소
560-2359	ever391@korea.kr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

청년취업채용신청서 (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명, 해당없음()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팩스	-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 -				
회 사 연 혁						
회 사 비 전 등 소 개						

구 분	분 야	인원	학력(전공)	상세 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 집 사 항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 _____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본 사업장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⑧ 청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⑩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단, 전년도 채용인원수 5인이하 적용 제외)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청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고창군수 귀하

「청년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심사지표

기 준		배점	비고	
기업규모 (30)	100인 이상 ~	30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5		
	10인 이상 ~ 49인 미만	20		
	10인 미만	15		
월 급여액 (35)	200만원이상 : 65만원(지원금액)	35		
	190만원~200만원미만 : 60만원(지원금액)	30		
	180만원~190만원미만 : 50만원(지원금액)	25		
중도탈락률 (25)	전년도 12월말 기 준	중도탈락률 10%이하	25	* 신규 참여기업 11% 이상 ~ 20% 미만적용 (20점) * 50% 초과, 전년도 채용인원 5명 이하 (10점)
		중도탈락률 11%이상 ~ 20%미만	20	
		중도탈락률 20%이상 ~ 30%미만	15	
		중도탈락률 30%이상 ~ 50%이하	10	
당해연도 신규채용 계획인원 (10)	20%이상 ~ 30%미만	10		
	10%이상 ~ 20%미만	8		
	10%미만	5		
가점 (10)	최근 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2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2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5		

* 탈락 : 평가 점수 60점 미만

신증년 취업채용신청서 (기업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 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명, 해당없음()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팩스	-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 -				

회 사 연 혁	
------------------	--

회 사 비 전 등 소 개	
---------------------------------	--

구분	분야	인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청년	신중년			청년	신중년
모집사항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만원(도, 시,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본 사업장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⑧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⑨ 신중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⑩ 신중년 취업지원 종료 후 동사업에 참여하여 채용하였던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⑪ 최근 3년이상 연속참여 하고 매년 중도탈락률이 50%초과 기업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신중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고창군수 귀하

[서식2]

신증년취업운영계획서(기업용)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	--	---------	---------

연수기간	. . . ~ . . . (개월)
------	--------------------

근무시간	: ~ :
------	-------

연수관리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근무부서 및 성명	근무부서	수습자 성명

운영계획	
직무교육 (멘토방법)	
부서배치방법	
정규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신중년 취업지원」 참여기업 심사지표(안)

기 준		배 점	비 고	
기업규모 (30)	100인 이상 ~	30		
	50인 이상 ~ 100인 미만	25		
	10인 이상 ~ 49인 미만	20		
	10인 미만	15		
월 급여액 (35)	250만원~	35		
	210만원~250만원미만	30		
	190만원~210만원미만	25		
	175만원~190만원미만	20		
중도탈락률 (25)	2018년 기 준	중도탈락률 10%이하	25	* 신규 참여기업 11% 이상 ~ 20% 미만적용 (23점) * 30% 이상~ 50%미만이나 전년도 채용인원 5명 이하 (20점)
		중도탈락률 11%이상 ~ 20%미만	23	
		중도탈락률 20%이상 ~ 30%미만	20	
		중도탈락률 30%이상 ~ 50%미만	15	
사업년도 신규채용 계획인원 (10)	20%이상 ~ 30%미만	10		
	10%이상 ~ 20%미만	8		
	10%미만	5		
가점	최근 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5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3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2		

* 탈락 : 평가 점수 60점 미만

고창군 공고 제2019- 1063호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법인 추가 모집공고

청년실업 및 관내 농어업법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9년 「농어업 법인 청년일자리사업」사업 참여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7. 16.

고창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농어업법인 청년 일자리사업
 -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지역정착지원형(1유형)
- 사업기간 : '19. 8.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 사업규모 : 4명
- 지원내용 : 관내소재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서 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70만원 지원
 - 1인당 월별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급여	자율지원(교통비)	법인 자부담(20%)
160만원	10만원	40만원

- ※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80%(1,920만원) 및 교통비 120만원 지원
- 추진절차 : 법인 모집·선정→ 청년 모집·선발→ 근무, 정규직 전환

2. 참여법인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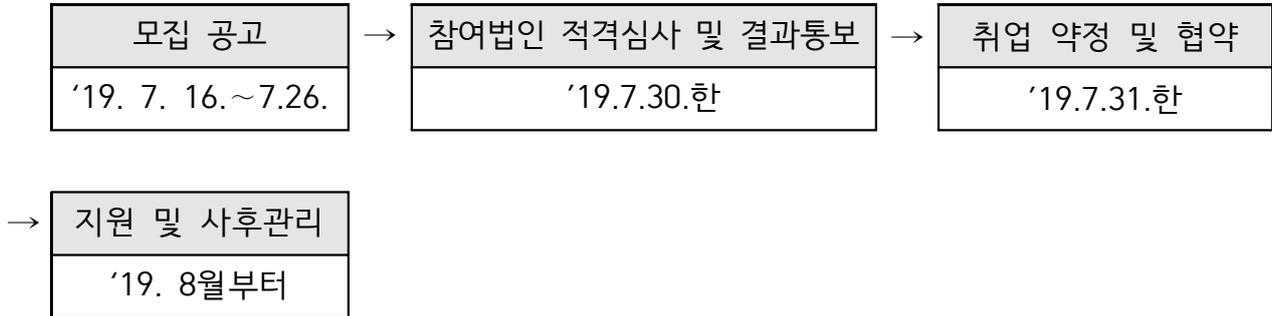
- 대상법인
 - 고창군 소재 고용보험 가입 농어업법인·조합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200만원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청년 채용한도 : 참여법인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 이전.확장.창업으로 공장 준공 시 당해연도 신규 채용인원의 20%이내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와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우편. e-mail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16.(화) ~ 7. 26(금)
 - 접 수 처 : 방문, 우편, e-mail 제출 (다만, 우편제출 시 '19. 7. 26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서식1]신청서, [서식2]운영계획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3. 신청 제외대상 법인

-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 법인(국·지방세 등)
 -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최근 3개월),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④ 청년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법인
-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청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⑥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법인(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법인법」에 따른 공법인
- ⑨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⑩ 청년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⑪ 국내법인의 해외 법인 및 지사 파견 목적 채용법인
- ⑫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법인,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법인(다만, 전년도 총 채용인원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적용제외)
- ⑬ 기타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법인

4.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이후는 연중 수시모집 지원

5. 유의사항

- 채용법인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 청년취업자 채용법인은 해당 시·군과「청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청년취업자 채용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법인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법인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주 소
560-2359	ever391@korea.kr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

[첨부 1]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참여법인 심사지표

기 준		배점	비고	
법인규모 (30)	20인 이상 ~	30		
	10인 이상 ~ 20인 미만	25		
	5인 이상 ~ 10인 미만	20		
	5인 미만	15		
월 급여액 (35)	220만원이상	35	지원금 포함	
	200만원~220만원미만	30		
	200만원	25		
중도탈락률 (25)	전년도 12월말 기 준	중도탈락률 10%이하	25	* 신규 참여법인 11% 이상 ~ 20% 미만적용 (20점) * 50% 초과, 전년도 채용인원 5명 이하 (10점)
		중도탈락률 11%이상 ~ 20%미만	20	
		중도탈락률 20%이상 ~ 30%미만	15	
		중도탈락률 30%이상 ~ 50%이하	10	
당해연도 신규채용 계획인원 (10)	20%이상 ~ 30%미만	10		
	10%이상 ~ 20%미만	8		
	10%미만	5		
가점 (10)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법인	4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법인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법인	5		

* 탈락 : 평가 점수 60점 미만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실시법인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후 기존 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 2년간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부정 수급	○ 기존직원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채용 ○ 실무수습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부정 수금액 환수 및 지원중단 ○ 2년간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제한
기타	○ 지침, 지원협약 위반 ○ 기타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 1차레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 2차레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 3차레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 3차레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2년간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및 고용노동부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에 통보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채용신청서(법인용)	1
[서식 2]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운영계획서(법인용)	3
[서식 3]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신청서(참여자용)	4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5~6
[서식 5]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선발자 명단통보서(법인용)	7
[서식 6]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약정서	8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	9
[서식 8]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협약서	10
[서식 9] 출근카드	14
[서식 10] 정규직명단 통보서	15
[서식 11]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 지원금신청서	16
[서식 12]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17
[서식 13]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체인력 명단통보서	18
[서식 14] 설문조사서	19
[서식 15]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실시법인 만족도 조사	21

[서식 1]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채용신청서(법인용)

※ 접수번호 :

업 체 현 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수	본 사	명(채용 후 명)	지사(지점)	명(채용 후 명)
	주요 사업내용	1. 2.		설립시기	
	업종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인턴채용 현황	()명, 해당없음()			
채용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	팩스	-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	- -			

회사 연 혁	
--------------	--

회사 비 전 등 소 개	
-----------------------------	--

구분	분야	인원	학 력(전공)	상세직무	정규직전환계획인원
모집사항	모집직종 1)				
	모집직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	1. 2. 3.			
	근로조건	· 급여 : 월 _____만원(도, 고창이군 지원금 포함) · 근무시간 : · 휴일 : · 기타 복지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취업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본 사업장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법인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취업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있는 법인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⑤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취업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법인,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법인(보험회사 등)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법인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⑧ 국내법인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⑨ 청년의 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⑩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초과 법인, 3년연속 정규직전환없는 법인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표

고창군수 귀하

[서식 3]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이 력 사 황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 기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경력(), 기타()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① 본 신청서는 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서식 4]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법인용)

법 인 명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전라북도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고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창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고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개인용)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고창군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인턴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북도 및 도내 고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북도 및 도내 고창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 귀하

[서식 6]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약정서

이 약정서는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_____(이하 “사업주”이라 함)와 청년일자리 참여자 _____(이하 “참여자”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 근무장소 :
- 3. 업무의 내용 :
- 4. 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 주__일/ 일
- 6. 휴가 :
- 7. 임금 : 월급 _____원 (지원금W 원, 회사지급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참여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함)과(와) _____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계약기간 :
- 2. 근무장소 :
- 3. 업무의 내용 :
- 4. 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 5. 근무일/휴일 : 주__일/토,일요일
- 6. 임금
 - 월급 : _____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 법인(이하 “실시법인”이라 한다)간에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실시법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군”은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법인”이 채용한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연수장소) ①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의 연수장소는 별첨「농어업법인 청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하는 “실시법인”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실시법인”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농어업법인 청년취업계획서의 작성·비치) “실시법인”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법인의 협력의무) “고창군”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법인”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운영상황의 통보) “실시법인”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 운영실적을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군”의 실적과약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금 지급) ① “군”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약정서에 따라 “실시법인”이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고창군의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금을 월단위로 “실시법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은 “실시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실시법인”은 급여일에 농어업법인 청년취업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5일까지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법인”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에 대하여 “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농어업법인 청년취업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법인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군”은 “실시법인”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실시법인”은 고창군의「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군”은 “실시법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은 “실시법인”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군”은 “실시법인”이 “군”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군”은 “실시법인”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군”은 “실시법인”이 본 약정체결이후 또는 정규직 채용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2년간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⑥ “실시법인”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군”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군”은 “실시법인”이 약정한 수습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채용 지원을 금지한다.

⑦ “실시법인”이 “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전라북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군”은 “실시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실시법인”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사업을 운영하거나, “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법인 청년취업사업의 중단 등) “실시법인”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실시법인”은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실시법인”은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

단을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군”은 “실시법인”의 농어업법인 청년 취업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어업법인 청년 취업운영계획,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시법인”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법인”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은 “실시법인”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는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창군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 “실시법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고 창 군 수

(실시법인)

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식 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div> <b style="font-size: 1.2em; margin-left: 10px;">출근카드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성 명 : _____ 수습기간 : _____ (개월) 채용업체 : _____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수습자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농어업법인 청년취업자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

[서식 10]

정규직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 - ()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수습자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결일	정규직 채용일	연락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고창군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 첨부 1.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1]

()월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지점
-----------	-------------	--------	----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원
취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농어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고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1. 취업약정서 사본(협약 체결후 변경이 있는 경우)
 2. 참여자 출근부 사본
 3. 임금대장 사본
 4. 계좌이체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5. 4대보험 납부(고지) 영수증

고창군 공고 제2019-1067호

고창군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15일

고 창 군 재 무 관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역명 :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라북도 고창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치 : 고창군 대산면(성송면), 부안면, 성내면 일원

2) 주요내용 :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총용역비 : 금1,321,760,000원(VAT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19년 08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업체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아래 각 부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질·지질, 구조

(2)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및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가”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비율을 49%이상(지역업체 평가인원 분책, 분참 각 3명)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전라북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가점을 부여합니다.

라. 공동도급일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여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바. 과업에 있어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라북도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1)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 2) 토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5) 측량 및 토질부문의 용역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토질조사부문	측량조사부문	비고
100%	82.3%	3.6%	14.1%	

3.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고창군 홈페이지 게재 : <http://www.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일시 : 2019. 07. 25(목) 09:00 ~ 18:00

* 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라.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 별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총 7부
 [2부(평가서 포함), 5부(별도제출, 업체명 미표시)]
- 업무증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등)

4.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라북도의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 2019-857호)” 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4.38점)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적격점수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1점)를 부여한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공공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위임장
-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별도 제출(USB 등)할 수 있습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아.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560-8991)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

고창군 대산하수관로 정비사업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19. 07



고 창 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2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의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성송면, 부안면, 성내면 일원
-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라. 용역비 : 금1,321,7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일반사항

-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 나. 장 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 나. 재 질 : 백상지(80g/m²)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m²),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다. 제본방법 : 무선철(상철)
- 라.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마.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 | | |
|-----------------------|--------|
| 1) 참여 기술인 조직표 | (양식 1) |
| 2) 참여 기술인의 총괄표 | (양식 2) |
| 3) 참여 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양식 3) |
| 4)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 (양식 4) |
| 5)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양식 5) |
| 6)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붙임 2] |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양식 6)

마. 신 용 도 (양식 7)

- 1)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 2)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 3) 신용평가등급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8)

- 1) 개발실적
- 2) 투자실적
- 3) 활용실적

사. 업무 중복도 (양식 9)

아.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0)

자. 자기평가표 (양식 11)

6.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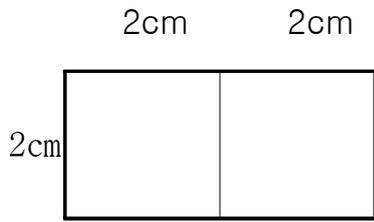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7.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 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바.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 아.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표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201 .

업 체 명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용역명 :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불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불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19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양식 0)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신 고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술인			
고 급 기술인			
중 급 기술인			
초 급 기술인			
합 계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임 기술 자											
자격증 종류						성 명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분야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많은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기 지분율에 따라 참여하여야 하며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업체별 평가대상 기술인수의 합계가 총 평가대상 기술인수와 상이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수에서 가감하여 총 평가대상 기술인수와 동일하도록 조정한다.
 ※ 49% 공동도급의 경우
 주도급사 : 분야별 책임기술자 : 3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 3인 참여
 공동도급사 : 분야별 책임기술자 : 3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 3인 참여
 4. 분야별 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 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고, 분야별 실무기술인은 각 분야별 5인 이내로 기재하며 최소 공동사별 및 분야별로 1인 이상 참여한다.

(양식 2)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책임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총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자격증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사업책임 기술인에 한함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나.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 요	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 처
								소속회사	직 위	
			총금액 기재							
합 계			백만원			건				

-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필요 시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 준공된 용역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첨부), 실적은 실적(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경력)확인서와 용역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교육기간 (년월 ~ 년월)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 의 연계내용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소속	본용역 참여분야	비고
책임기술인	책임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총 용역 금 액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 주 처	비 고
	계	건						

-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 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와 용역 발주청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용역개요					
본용역과의 연계내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형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용역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7)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기간(부정당업자 지정) 및 기술인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 용역업체

회사명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회사명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1) 회사의 부실벌점

업 체 명	부 실 벌 점	비 고

2)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부 실 벌 점	비 고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신용평가등급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가) 개발실적

구	분	명 칭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최 초 출원인수	산 정 점 수
기술개발실적	신 기술					
	계					
	특 허					
	계					
	실 용 신 안					
	계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 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비 고
2000년				
2000년				
2000년				
합 계				
평 균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용실적

구 분	연도	명 칭	공사명	내용	활용건수	활용금액 (억원)	가중치	비 고
신 기 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 주)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9)

업 무 종 복 도

책임기술인 : (성명)

연 번	용 역 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연 번	용 역 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연 번	용 역 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실무기술인 : (성명)

연 번	용 역 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 사항기재)
계			개월			

- 주)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참여업체는 반드시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용역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교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각이 가능하다.
- *.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의 경우 2019.04.01.이후 착수된 건에 한하여 기재하며, 실무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상의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의 용역 참여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10)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구 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 용 도	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소 계			
		입찰참가 제한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소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19. 07.



고 창 군

목 차

- I. 일반사항 3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 III. 평가항목 및 배점 10
- IV. 분야별 평가기준 11
- V. 가점 평가기준 19
 - (붙임1)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20
 - (붙임2)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21
 - (붙임3)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24
 - (붙임4)신용평가등급 기준 25
 - (붙임5)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 26
 - (붙임6)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27
 - (붙임7)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양식) 28

I. 일반사항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2호(2018.12.26.)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전라북도 공고 제2019-857호(2019.05.16.)]을 준용하여 우리군에서 별도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기준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많은 업체에서 참여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에 따라 참여하여야 하며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업체별 평가대상 기술인수의 합계가 총 평가대상 기술인수와 상이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수에서 가감하여 총 평가대상 기술인수와 동일하도록 조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실적은 용역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고, 필요시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에 준공된 용역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발주청 경력확인서 첨부),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실적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6.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한다.

7.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9.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제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3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

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기술용역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의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기간을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 준공된 용역의 경력은 발주청의 경력확인 증명서로 평가할 수 있다.

15.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용역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 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1] 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단,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용역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 / 12개월) × 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로 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

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 [붙임7] 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16.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대상 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용역업체 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면허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이적일 확인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17.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Design - 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8. 사업 특성상 업체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III.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1)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가) 등 급	3.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나) 경 력	4.0		
	(다) 실 적	5.0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2)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가) 등 급	4.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나) 경 력	7.0		
	(다) 실 적	8.0		
	(3)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가) 등 급	4.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나) 경 력	5.0		
	(다) 실 적	5.0		
(4)교육훈련, 전차용역	2.0	절대평가		
(가) 교 육 훈 련	1.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용역 수행실적 	
(나) 전 차 용 역	1.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1)실적 건수	7.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2)실적 금액	7.0		
	(3)전차용역	1.0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7.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용역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2)재정상태 건실도	3.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1)개 발 실 적	2.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2)투 자 실 적	10.0		
	(3)활 용 실 적	3.0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1)책임기술인	3.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인	4.0		
	(3)분야별참여기술인	2.0		
	(4)실무기술인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IV.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15													
	등급	3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구 분</td> <td>특 급</td> <td>고 급</td> <td>중급 이하</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0</td> <td>1.0</td> </tr> </table>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0	1.0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0	1.0												
경력	4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을 평가(단, 최대요구 기간은 1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구 분</td> <td>15년이상</td> <td>15년미만 13년이상</td> <td>13년미만 11년이상</td> <td>11년미만 9년이상</td> <td>9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적	5	·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용역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단, 최대요구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건수 기준 ()안은 5억원이상 용역에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구 분</td> <td>10건이상</td> <td>10건미만 ~ 8건이상</td> <td>8건미만 ~ 6건이상</td> <td>6건미만 ~ 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점 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p>·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 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p>-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p> <p>※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p>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p>· 평가대상 전문분야는 [붙임1]에 따르면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p> <p>·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p>												
	등급	4	<p>·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전문분야 기술인에 한하며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고급이상</td> <td>중 급</td> <td>초 급</td> </tr> <tr> <td>점 수</td> <td>4.0</td> <td>3.0</td> <td>2.0</td> </tr> </table>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점 수	4.0	3.0	2.0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점 수	4.0	3.0	2.0												
	경력	7	<p>·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 기간을 평가 (단, 최대요구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이상</td> <td>8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실적	8	<p>· 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단, 최대요구건수는 10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건이상</td> <td>10건미만 8건이상</td> <td>8건미만 6건이상</td> <td>6건미만 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0</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p>· 평가대상 전문분야는 [붙임1]에 따르면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p> <p>·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p>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등 급	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전문분야 기술인에 한함(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중급이상		초 급	
			점 수	4.0		3.0	
	경 력	5	· 자격취득 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 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 근무경력 기간을 평가 (단, 최대요구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실 적	5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단, 최대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훈련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2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전차용역 수행실적	1	<p>· 전차용역에 참여한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용역에 참여한 기간 및 전차용역 수행 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 0.5점 <p>※ 전차용역은 당해용역의 前단계용역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 46조 및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단계와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계획 등의 변경 용역 시 변경 전 용역을 전차로 인정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변경의 경우 당해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평가 · 前단계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각 용역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금액)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p>- 전차용역은 고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5.08)건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및 금차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참여비율 적용 <p>예) 전차 4개 분야 중 금차 2개 분야 참여, 3년 미만인 경우 $0.5 \times 2/4 \times 1.0 = 0.25$점</p> <table border="1" data-bbox="517 1160 1423 1384">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th> </tr> <tr> <th>용역완료 후 3년 미만</th> <th>용역완료 후 3~5년 미만</th> <th>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책임기술인</td> <td>1.0</td> <td>0.8</td> <td>0.6</td> </tr> <tr> <td>분야별책임기술인</td> <td>1.0</td> <td>0.8</td> <td>0.6</td> </tr> </tbody> </table> <p>※ 평가방법(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기술인 : 0.5점 × (전차용역 참여기간 / 전차용역계약기간)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분야별책임기술인 : 0.5점 × [∑(전차용역 참여기간 / 전차용역 계약기간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평가분야 수] 	구 분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	1.0	0.8	0.6	분야별책임기술인	1.0	0.8	0.6
구 분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	1.0	0.8	0.6															
분야별책임기술인	1.0	0.8	0.6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용역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된 용역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고 분야별 유사용역 실적 인정 범위는 [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용역의 실적(건수 및 실적)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용역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용역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용역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용역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용역 참여지분율(60%) × 당해 용역의 참여지분율(50%) =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용역 참여지분율(60%) × 당해 용역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실 적	7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512 1265 1423 1391"> <tr> <td>실 적 (건 수)</td> <td>5건이상</td> <td>5건미만 ~ 4건이상</td> <td>4건미만 ~ 3건이상</td> <td>3건미만 ~ 2건이상</td> <td>2건미만</td> </tr> <tr> <td>점 수</td>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금 액	7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512 1534 1423 1659"> <tr> <td>실 적 (금 액)</td> <td>50억이상</td> <td>50억미만 40억이상</td> <td>40억미만 30억이상</td> <td>30억미만 20억이상</td> <td>20억미만</td> </tr> <tr> <td>점 수</td> <td>7.0</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전차용역 수행실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용역은 당해용역의 前단계용역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단계와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계획의 변경 용역 시 변경 전 용역을 전차로 인정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변경의 경우 당해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평가 - 前단계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각각 용역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금액)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 전차용역은 고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5.08)건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한 후 합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4">기간 경과에 따른 가중치</th> </tr> <tr> <th>용역완료 후 3년 미만</th> <th>용역완료 후 3~5년 미만</th> <th>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th> <th>용역완료 후 1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0.8</td> <td>0.6</td> <td>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기존 전차용역의 참여지분율이 60%, 용역완료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용역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 = 배점 × 전차용역 참여지분율(60%) × 당해용역 참여지분율(40%)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1.0) 	기간 경과에 따른 가중치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1.0	0.8	0.6	0
기간 경과에 따른 가중치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1.0	0.8	0.6	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역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10																				
		7	(1) 용역업자(3.5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없음</td> <td>1개월</td> <td>2개월</td> <td>3개월</td> <td>4개월</td> <td>5개월 이상</td> </tr> <tr> <td>배 점</td> <td>3.5</td> <td>3.3</td> <td>3.1</td> <td>2.9</td> <td>2.7</td> <td>2.5</td> </tr> </table>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7	(2) 참여기술인(3.5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없음</td> <td>1개월</td> <td>2개월</td> <td>3개월</td> <td>4개월</td> <td>5개월이상</td> </tr> <tr> <td>배 점</td> <td>3.5</td> <td>3.3</td> <td>3.1</td> <td>2.9</td> <td>2.7</td> <td>2.5</td> </tr> </table>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7	(3) 부실벌점(-0.2 ~ -5점) ·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을 참여지분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tr> <td>누계평균 벌 점</td> <td>1점이상 2점미만</td> <td>2점이상 5점미만</td> <td>5점이상 10점미만</td> <td>10점이상 15점미만</td> <td>15점이상 20점미만</td> <td>20점이상</td> </tr> <tr> <td>감 점</td> <td>-0.2</td> <td>-0.5</td> <td>-1.0</td> <td>-2.0</td> <td>-3.0</td> <td>-5.0</td> </tr> </table>							누계평균 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누계평균 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재정상태 건실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table border="1" data-bbox="515 969 1425 1245"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회 사 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 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8</td> <td>2.1</td> <td>0</td> </tr> </table> <p data-bbox="528 1256 1425 1332">※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p>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table border="1" data-bbox="515 943 1425 112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배점 (건당)</th> <th colspan="3">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th> </tr> <tr> <th>5년 미만</th> <th>5~10년미만</th> <th>10~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신 기술</td> <td>2.0</td> <td>-</td> <td>-</td> <td>-</td> </tr> <tr> <td>특 허</td> <td>1.0</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0.5</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구 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515 1615 1425 174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1.50%이상</th> <th>1.50%미만 1.25%이상</th> <th>1.25%미만 1.00%이상</th> <th>1.00%미만 0.75%이상</th> <th>0.75%미만 0.5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body> </table>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활용실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border="1" data-bbox="512 1193 1423 139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 분</th> <th colspan="5">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th> </tr> <tr> <th style="width: 10%;">1.0</th> <th style="width: 10%;">0.9</th> <th style="width: 10%;">0.8</th> <th style="width: 10%;">0.7</th> <th style="width: 10%;">0.6</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r> </tbody> </table> <p>※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구 분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 분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p>마. 업무종류별</p>		10	<p>·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p> <table border="1" data-bbox="518 448 1428 716"> <thead> <tr> <th>구 분</th> <th>200% 이하</th> <th>200%~250%</th> <th>250%~300%</th> <th>300%~350%</th> <th>350%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책임기술인</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r> <td>분야별 책임기술인</td>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r> <td>분야별 참여기술인</td>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r> <td>실무기술인</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body> </table> <p>·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p> <p>·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p> <p>·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p> <p>·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p> <p>※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은 2019.4.1.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단, 법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p> <p>※ 업무중복도 대상 주공정분야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수질)</p>	구 분	200% 이하	200%~250%	250%~300%	300%~350%	350% 초과	책임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구 분	200% 이하	200%~250%	250%~300%	300%~350%	350% 초과																											
	책임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실무기술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5인)에 대해 평가한다.

V.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붙임 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분야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자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상하수도	하수도	사업책임 기술인	상하수도	◦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 ※ 업체유사용역 평가시 : 상수도 분야 50% 인정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도시계획	

-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평가분야 중 최소 3개 분야(환경은 2개 분야) 이상을 평가하여야 한다.
-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항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 특성에 따라 기술인 평가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본 기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역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19 . .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6부를 작성하여 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4부는 별책으로 제출 (제출부수, 작성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 제시)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p>							

<붙임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율(%)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붙임 7>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신 청 인	1-1)회 사 명		1-2)대 표 자		
	1-3)영업소재지		1-4)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공 사 명	(국문) (영문)			2)발주기관 (발 주 국)	
3)계약 및 준공	3-1)계약일자		3-2)착공일자	3-3)준공일자	
	3-4)계약금액		3-5)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p>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처					
공 사 명					

2019. 6.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고 창 군

목 차

1.0 과업명	1
2.0 과업의 목적	1
3.0 과업의 범위	1
3.1 총괄	1
3.2 단계별 과업범위	2
4.0 과업기간	2
5.0 과업의 내용	2
5.1 측량	2
5.2 토질조사	3
5.3 보상조사	4
5.4 현장조사	4
5.5 기본설계	5
5.6 실시설계	6
6.0 과업의 수행	9
6.1 과업수행기간	9
6.2 감독 및 보고	10
6.3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10
6.4 보안대책	11
6.5 설계변경 조건	11
6.6 기타사항	12
7.0 성과품 작성	12
8.0 성과품 제출	14

1.0 과업명 :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 과업의 목적

고창군 대산면, 성송면, 부안면, 성내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등이 개인오수 처리설만을 거쳐 방류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0 과업의 범위

3.1 총괄

3.1.1 기본 및 실시설계

- 1) 하수관로 : 3개지구(오수관로 D=200mm, L=28.2km)
- 2) 토질조사 : 14공(NX)
- 3) 측량조사 : 1식
- 4) 배수설비조사 : 1식

3.1.2 기 타

- 1)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의(또는 자문회의)
- 2) 관련 인·허가시행

3.2 단계별 과업범위

3.2.1 1단계

- 1) 기본 및 실시설계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기본계획 수립
 - 하수관로 노선계획 수립
 - 펌프장 위치 검토
 - 처리공법 선정기준 설정 등
- 2) 현장조사
 - 토질조사 : 14공(NX)
 - 측량조사 : 1식
 - 배수설비조사 : 1식

3.2.2 2단계

- 1) 기본 및 실시설계
 - 처리공법 선정
 - 기본설계 및 설계자문
 - 실시설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 실시설계심의 및 설치인가(재원조달협의 포함)
 - 최종 성과품 작성(인허가 등 포함) 등
- 2) 기 타
 - 기타 각종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서류작성 등

4.0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포함,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5.0 과업의 내용

5.1 측량

1) 수준측량

- 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완주군에서 제공한 사업구간 지적도를 취득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측량수준점(1.0km 간격 설치)과 IP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의 표시말뚝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준점, IP, 인조점, 구조물 시종점 말뚝의 성과 및 설치상세도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2) 노선측량

- 가) 선정된 노선에 따라 도상계획에 의해 선형 확정 후 확정된 선형에 따라 실시한다.
- 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고 지형변화 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 측점 설치 후 실시한다.
- 다) 시.종점, IP점,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한다.

5.2 토질조사

1) 조사일반

- 가) 본 토질조사는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완주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보오링 깊이는 육상 10.0m를 기준으로 풍화암 2.0m까지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의 기초검토가 충분하도록 한다.
- 다)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질평면도 및 지질종단면도를 작성하여 시공시 안전한 기초처리가 되도록 한다.
- 라) 조사범위 및 사용장비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착수하고 구조물 기초설계시 활용하여야 한다.
- 마) 지질조서 결과는 기 굴착한 지질조서 성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 가) 시추구경은 NX 규격으로 한다.
- 나) 시추심도는 수량서에 기재된 대로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조건 및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변경하여야 한다.
- 다) 시추조사는 코아 회수율이 최대가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라) 시추 완료후에는 PVC 파이프를 필요한 구간에 삽입하여 시추공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며 파이프 상단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캡 장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채취된 시료 및 코아는 규정된 용기에 자연상태로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구간마다 심도 표시를 한다.
- 바) 시추조사와 병행 또는 시추조사 후 실시하게 되는 제반 현장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사) 채취된 코아는 심도를 명확히 표시한 후 파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시료함에 심도 순으로 배열하여 관찰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아) 본 작업은 KS, ASTM 및 관계 지방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자) 채취된 시료는 역학 및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실내토성시험 :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입도
 - 실내역학시험(연약지반) : 압밀시험
- 차) 현장 조사 과정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 주상도를 기록한다.
- 카) 표준관입시험은 1.5m 혹은 지층 변화시마다 KS F 2318에 규정한대로 실시한다.
- 타)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즉시 주상도에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별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절리 및 균열의 발달상태, 코아 회수율 R.Q.D 및 균열지수 등 필요한 제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출한다.
- 파)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5.3 보상조사

1) 하수처리시설

- 가) 하수관로 및 맨홀펌프장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4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토록 하며, 상위계획인 고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성과품(I/I 조사 및 맨홀조사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1) 유량 및 수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자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5.5 기본설계

1) 처리구역의 검토 및 선정

처리구역을 지형, 지세 및 시가지 형태, 하수도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처리분구로 분할하여 용도지역별 면적을 산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시 채택할 적정 처리구역을 제시, 결정한다.

2) 하수도 인구의 배분검토 및 확정

각종 상위계획을 기초로 하여 목표년도의 처리대상 인구를 처리분구별로 배분한다.

3) 방류수역의 오염도 검토

집단지주지역, 상업지구, 분뇨,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의 오염원 현황을 조사한다.

4) 하수량 추정 및 하수수질 분석 확정

- 가) 생활하수, 공장폐수(연계처리시 분뇨 및 축산폐수 포함), 지하수 유입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하수량을 추정하되 특히 생활하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사결과를 적용하고 필요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한다.
- 나) 공장폐수 배출량 및 수질은 지방환경청 또는 군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되, 폐수의 수질 및 배출량은 계절별, 시간대별, 가동현황 등을 고려 실제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특히, 지하수 유입량 추정은 처리구역내 각 주요 토구별 위치와 배수구역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배출량과 수질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지하수 등 불명수 과다 유입지역에 대하여는 관로를 우선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상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의 작성

하수 및 슬러지 처리공정에 따른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국내외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자료 및 문헌을 참고 후 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하수관로의 규모 결정

- 가) 하수관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처리구역내 발생하수가 전량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능한 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고 관거연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검토한다.

7) 사업비 산정

- 가) 공사비 산정

하수관로 년차별 매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토목, 기계, 전기 분야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물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한다.
- 나) 유지관리비 추정

맨홀펌프장의 연간 전력비 등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8) 사업의 효과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를 통한 사업의 효과를 명시한다.

5.6 실시설계

1) 기본방향

실시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시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적용자료 및 기준

- 가)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지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고 건물 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마)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하수관로

처리구역내의 하수관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되 최종년도의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하수관로

- 현지조사(측량, 토질조사, 재료원 및 각종 보상관계)
-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공사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5) 실시설계의 내용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실시설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토목공사
기능설계, 구조계산, 수리계산, 관로평면도, 각종 구조물도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기타
- 기계공사
맨홀펌프장관련 SYSTEM 설계, 공사도면, 기자재구매시방, 기기 용량계산서(용량산출 및 적정대수 계획), 기기배치도 및 배관설계도,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기타 설계도면, 주요장비 선정 설명서
- 전기, 계장설비 공사
기기용량계산서(용량산출 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 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량 및 수질계측장비, 계장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 부대공사
도로망 계획, 조경설계, 기타 부대시설 설계
- 기타 각종 협의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시 반영할 사항

가) 설계적용기준

- 설계기준 :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4. 1 환경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2015)
외국의 제 기준, 기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 적용품셈 : 2019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전라북도 설계지침 등
- 단가적용 : 통계법 제3조에 의한 노임단가, 조달청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 시 방 서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시방서와 과업일반시방서
- 설계하중 : 재료의 단위중량, 재질, 절.성토고, 구배, 피복고, 안전율 등의 공법적용은 시행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세부설계기준

-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지진 등 제 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내구적인 구조로 한다.
-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영향을 받는 하수도구조물은 부력과 양압력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은 강도설계법으로 하고 지반의 부등침하까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구간은 지하매설물 안전과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충분히 안전한 공법을 선정한다.
- 시공이음, 신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 사용되는 기자재는 부식, 피로파괴, 허용계수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은 내부식성 및 내화학적성(STS304, STS316)이 우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기자재는 하수침전물, 부유물질로부터 유체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가동시 높은 효율과 경제성(에너지절감 등), 유지관리 및 수선이 용이한 구조(호환성, 분해 및 조립 등)로 하여야 한다.
- 전기계장설비의 운전과 제어방식의 software는 상태검출에 의해 상시효율이 출력되어야 한다.
- 중요 부하에 대해서는 예비설비 확보와 안전성 있는 전력공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하단에 주석로 설명하여야 한다.
- 공정계획 제출
구조물별 공정계획에 의거 전체공사의 예정공정계획(인원, 장비, 자금투입 계획등 포함)을 최신 기법으로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6.0 과업의 수행

6.1 과업수행기간

- 1)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2) 도급자는 설계심의(또는 자문회의) 및 관련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3)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군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6.2 감독 및 보고

- 1) 본 과업은 발주청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2)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과업수행책임자가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나) 세부수행 예정공정
 - 다)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 편성표
 - 라) 과업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 4)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실제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5) 본 용역수행 중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이 포함된 월간공정보고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 교체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작업공정 및 차기 작업계획
 - 나) 착안사항의 개요, 진도 및 건의사항
 - 다)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라) 기타 감독관 지시사항

6.3 특허권 및 각종 신기술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근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보안대책

- 1) 대표자 및 본 용역 과업종사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 2) 본 과업수행종사자의 변동이 있을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 3)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폐쇄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 4)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6.5 설계변경 조건

- 1)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6.6 기타사항

-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본 과업용역수행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

- 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구두 및 서면지시는 본 과업지시 내용으로 간주 시행하여야 한다.
 - 5) 환경부, 전라북도 등 사업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6)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범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농업진흥지역해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결정인가, G/B행위허가, 하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도로법에 의한 인허가행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7) 설계비 및 직접경비는 최종 공사금액 및 실물량을 바탕으로 설계완료시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7.0 성과품 작성

- 1)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 2)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 세부도면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 4) 설계도면 규격은 A3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5)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CD-ROM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CD-ROM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7)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 8)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정부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정부발생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 9)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 10)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건축설비, 기계, 전기 및 계장, 기타 부대시설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 11)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 12)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기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 13) 적용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를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납품 시 제출한다.
- 14)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15) 도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선정해야 한다.
- 16)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학계 전문가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8.0 성과품 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 | | |
|------------------------------|------|
|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A4복사) | : 5부 |
|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A4복사) | : 5부 |
| 3) 토질조사 보고서(A4복사) | : 5부 |
| 4) 각종시방서(A4복사) | : 5부 |
| 5) 각종 계산서(A4복사) | : 5부 |
| 6) 수량산출서(A4복사) | : 5부 |
| 7) 설계예산서(A4복사) | : 5부 |
| 8) 단가산출서(A4복사) | : 5부 |
| 9) 일위대가(A4복사) | : 5부 |
| 10) 기본 및 실시설계 축소도면(복사A3) | : 5부 |
| 11) 측량 성과품 | : 1식 |
| 12) 토질조사 관련 성과품(시료상자, 사진첩 등) | : 1식 |
| 13) 용지도 및 용지조서 | : 1식 |
| 14) 기타 설계자료 각종사진첩 | : 5부 |
| 15) 최종 성과품 CD-ROM | : 1식 |
| 16) 인허가 관련 서류 | : 1식 |

2019 전라북도 사회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2019년 「전라북도사회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조사관리자 2명, 조사원 18명 (20% 신규자 채용)

2. 채용기간

- 준비조사 : 2019. 8. 12.(1일)
- 본 조사 : 2019. 8. 13. ~ 9. 2. (기간 중 14일)

3. 자 격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채용(관련서류 제출자)
- ※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이전 통계조사 중도포기자 채용 제외)

4. 접수 및 채용방법(절차)

- 1) 접수기간 : 2019. 7. 17. ~ 7. 25.(8일간)
- 2) 접수장소
 - 방문접수 :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 온라인접수 : 이메일 (wlgus35@korea.kr)
-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사진부착)
- 4) 채용통보 : 2019. 7. 29.(월) / 합격자 개별통보
- 5) 문 의 처 : (063) 560-2237, 고창군청 통계담당(조지현)

고 창 군 수

고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5호

2019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창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 용 직 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분 야
한센정착촌 관리 (보건소)	지방보건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한센병 관리사업에 따른 고창군 한센인 관리 ○ 신환자 발견사업 및 치료, 재활 복지사업 ○ 한센서비스 대상자 보호 및 투약지도 ○ 정착마을 보건증진을 위한 관리 및 지도 등

※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2. 임용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기준

- 1)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 시 연 령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2)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각 및 그래픽디자인 홍보	1.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한센병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센병사업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재직한 경력 나. 공인된 한센병사업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로서 한센병관리 의사가 추천한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합격자발표 :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08. 05(월) 09:00 ~ 08. 07(수) 18:00까지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토·일요일 접수 불가, 대리접수·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고창군 울력행정과 인사팀(2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9급은 상한액 이하로 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근무시간
9급(상당)	46,456		주당 40시간

7. 제출 서류

- (1). 응시원서 1부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 응시수수료 : 고창군 수입증지 인증(고창군청 1층 종합민원과 4번창구)
(6·7급 : 7,000원 / 8·9급 : 5,000원)
-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3).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 (5).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 (6).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 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
- (7).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 (9). 직무수행계획서 1부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11).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력행정과 인사팀(☎ 063-56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7호서식]2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0000-0000	
대지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무성면 성내리			지번	45
건축주	이용필	주민등록번호	480103-	허가(신고)번호	2019-중합면적과 - (중합면적) - 50
도로길이	32 m	도로너비	0.78 m	도로면적	21 m ²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m ²)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45	21	2019.07	이용필	480103-	이용필 
작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30304-26821 내
'98.12.28. 제정승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m²)

